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<http://www.kma.org>] / 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 / 팀원 이승아 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9080호

시행일자 2025. 11. 2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전부개정 안내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6호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6호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"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"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1호, 2024.11.28.)을 아래와 같이 개정·고시한바,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회 회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전부개정

- 주요내용 : 2026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 
※ 상세내용 붙임 참고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83.8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84.2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5.6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101.1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104.3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85.1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105.5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98.6원

- 시행일 : 2026.1.1.

#붙임 : (제2025-186호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전부개정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